

채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주식회사 ●●은행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주식회사 ○○은행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95,000,000원

(20○○. ○. ○.자 대여금 40,000,000원 및 20○○. ○. ○.자 대여금 55,000,000원의 합계)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각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의 각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 ○. ○. 금 40,000,000원을 이자는 정하지 아니하고 변제기는 채권자가 요구하는 때로부터 2, 3일 뒤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해 ○. ○○. 금 55,000,000원을 이자는 정하지 아니하고 변제기는 20○○. ○○. ○.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소갑 제1, 2, 3호증 참조).
2. 채무자의 제3채무자 1. ■■주식회사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한편, 채무자는 20○○. ○.경 제3채무자로부터 ○○시 ○○구 ○○동 ○○에 있는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금 5,000만원, 월세 금 10만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있습니다.
3. 채무자의 나머지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
또한, 채무자는 나머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통예금 등 각종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이 있습니다.
4.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는 오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채무자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채권을 수령하거나 처분해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가압류하지 아니하면 본안판결에서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5.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 ■ 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 | | |
|------------|-------|
| 1. 소갑 제1호증 | 차용증서 |
| 1. 소갑 제2호증 | 현금보관증 |
| 1. 소갑 제3호증 | 각서 |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소명방법 | 각 1통 |
| 1. 법인등기부등본 | 3통 |
| 1. 가압류신청진술서 | 1통 |
| 1. 송달료납부서 | 1통 |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채권 금 95,000,000원

제3채무자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임차목적물(○○시 ○○구 ○○동 ○○에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종료나 해지시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가운데 위 청구채권에 이르는 금액

제3채무자 2.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가운데 이 기재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것부터 차례로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부터 차례로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제3채무자 3.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가운데 이 기재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것부터 차례로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부터 차례로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채권자(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다 음 ◇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나. 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예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 아니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할 것)

나. [유체동산가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사건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할 것

다.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이외에 유체동산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할 것

☐ 기타 사유 → 내용 :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현재 진행상황(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은?

③소송결과(소송이 종료된 경우)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다. [“예”로 대답한 경우]

①동시 또는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현재 진행상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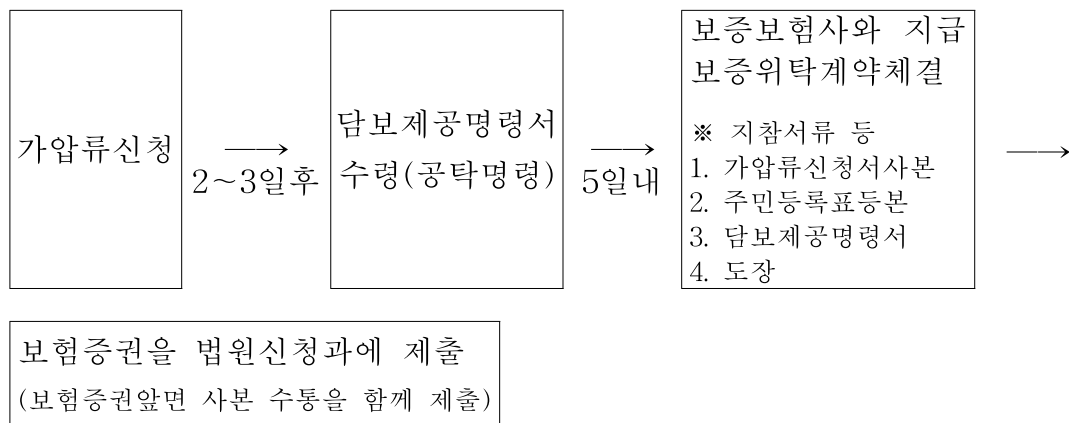
③ 신청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 유의사항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사람별로 이 서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출 법 원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제 출 부 수	신청서 1부(당사자목록, 청구채권목록, 가압류 채권목록 각4부정도 첨부)	관 련 법 규	민사집행법 제276 조, 제278조
불 복 절 차 및 기 간	(채권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본안의 제 소명령(민사집행법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결 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 제든지 할 수 있음.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예 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 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신청서첨부인지액표)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기 타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할 것을 신청할 경우 인지액 500원 추가 ・2003. 11. 1.부터 접수되는 가압류신청 사건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별지로 제출해야 함.		

※ 집행절차



※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방식도입(부동산·자동차·채권에 한함)

1. 부동산, 자동차, 임금 또는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발급받아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가처분 사건과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은 제외

2. 보증금액

○ 아래의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 참고

3. 가압류신청서상에 담보제공은 증권제출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
예)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증권회사 증권번호 제○○○ - ○○○○ -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2003. 10. 20.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

구 분	부 동 산	채 권	유 체 동 산
담보제공액	청구금액의 1/10 ¹⁾	청구금액의 2/5 ²⁾	청구금액의 4/5 ³⁾
담보제공 방법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⁴⁾	○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⁴⁾ ○ 다만, 임금, 영업자 예 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담보제공액의 1/2 범위 내의 현금공탁 (즉, 청구 금액의 1/5 범위 내의 현금 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 ⁵⁾	담보제공액의 1/2(청 구금액의 2/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 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 ⁵⁾
채권자별 구분 ⁶⁾	없음	없음	없음
선담보 ⁷⁾	가능	가능 (임금, 영업자 예금 제외)	불가능
기타 ⁸⁾	소명 정도에 따라 담 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 금공탁만을 허용	임금, 영업자 예금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도 소명 정 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 1) 변동 없음
- 2) 담보제공액 100% 증액(1/5 → 2/5)
- 3) 담보제공액 140% 증액(1/3 → 4/5)
- 4) 원칙적으로 현금공탁을 할 것인지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채권자에게 맡김
- 5) 유체동산,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 담보제공액의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담보로 인정함
- 6)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 구분을 없앴.
다만,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담보제공 방법을 찾을 때까지 현행과 같이 무공탁
- 7) 임금, 영업자 예금, 유체동산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같이 선담보제공 허용
- 8) 부동산가압류, 임금 및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가압류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로 현금공탁만을 허용

※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신청사건의사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재민 2003-4)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1. 1.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